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무복무자는 보직 선택의 자유가 없고, 24시간 영내 생활로 따돌림·구타·가혹행위 등의 확인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 사망군경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복무생활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중과실, 사적행위 등 배제 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를 “직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복무 생활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 ----- ----- -----.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1. ----- ----- --- 제17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 202 - 5431